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74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윤영석・서천호・박상웅
임종득・김태호・김소희
박대출・이달희・우재준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 이전은 부지 확보, 건설, 설비 이전, 인력 이동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 및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이

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로 인해 지방으로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0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② ---------- ---------- ---------- ---------- ---------- ---------- ---------- ---------- ---------- ----------2027년 12월 31일---------- ---------- ---------- ---------- ---------- ---------- ---------- ---------- ---------- ----------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